

2019년도 서울특별시

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244 |
|----------|-----|

2018년 12월 일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18. 11. 1.

2. 제안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3. 회부일자 : 2018. 11. 5.

4. 상 정 :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

1)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(2018. 12. 6.)

- 안전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

2)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(2018. 12. 14.)

- 원안 가결

Ⅱ. 제안설명 요지 (교육행정국장 장석윤)

1. 제안이유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로 생명·신체에 입은 피해 지원을 위해 설치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것임

2. 주요내용

- 2019년도 기금의 규모는 142억 9천 6백만원으로 2018년도에 비해 17억 2천 5백만원이 감소
 - 2018년도말 기준 74억 5천 6백만원이 조성됨
- 수입계획은 총 142억 9천 6백만원으로
 - 공제료 수입 62억 8천 2백만원,
 - 공제급여 등 보조금 3억 3천 2백만원,
 - 수익사업 전입금 1억 2천만원,
 - 이자 및 구상금 수입 1억 6백만원,
 - 전년도 이월금 74억 5천 6백만원임
- 지출계획은 총 142억 9천 6백만원으로
 - 공제 및 예방 사업비 79억 9천 2백만원,
 - 피해자 상담 및 폭력피해 지원 1억 8천 4백만원,
 - 인건비 등 운영경비 15억 8천 3백만원,
 - 차기 이월금은 45억 3천 7백만원임

Ⅲ. 검토의견 (전문위원 엄지운)

1. 제안경위

- 「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」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제2항¹⁾에 따라 11월 1일에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

2.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

-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²⁾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,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설치한 기금(이하 '공제기금' 이라 함)으로 같은 법 제15조³⁾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(이하 '공제회'라 함)가 같은 법 제54조⁴⁾에 따라 관리·운용하는 기금임

〈표 3-1〉 공제기금 설치현황

| 기금명 | 설치연도 | 근거법령 | 설치목적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| 2007 |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 |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, 공제급여 충당 |

- 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2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(기금의 설치 및 조성)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,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- 3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)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·도에 학교안전공제회(이하 "공제회"라 한다)를 설립한다.
- 4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기금은 공제회가 관리·운용한다.

(1) 기금총괄

- 2019년도 동 기금의 조성규모는 45억 3,700만원으로 2018년도 조성규모(74억 5,600만원)보다 △39.1%, △29억 1,900만원 감소한 규모로 확인됨

〈표 3-2〉 2019년도 공제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백만원, %)

| 기 금 명 | 2018년도말 조성현재액 (A) | 2019년도 | | 2019년도말 조성현재액 (B=A+㉠-㉡) | 증 감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수입㉠ | 지출㉡ | | 금액 (C=B-A) | 비율 (C/A) |
|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 예방기금 | 7,456 | 6,840 | 9,759 | 4,537 | △2,919 | △39.1 |

- 2019년도 기금수지총액은 142억 9,600만원으로 2018년도 (160억 2,100만원) 대비 △10.8%, △17억 2,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

〈표 3-3〉 2019년도 공제기금 수지 총괄

(단위 : 백만원, %)

| 수 입 계 획 | | | | 지 출 계 획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항 목 | 2019년도 | 2018년도 | 증 감 | | 항 목 | 2019년도 | 2018년도 | 증 감 | |
| | | | 비율 | 비율 | | | | 비율 | 비율 |
| 합 계 | 14,296 | 16,021 | △1,725 | △10.8 | 합 계 | 14,296 | 16,021 | △1,725 | △10.8 |
| 전 입 금 | 6,282 | 5,452 | 830 | 15.2 | 비용자성 사업비 | 8,176 | 7,018 | 1,158 | 16.5 |
| 보 조 금 | 332 | 21 | 311 | 1,481.0 | 인 운 영 비 | 1,165 | 1,071 | 94 | 8.8 |
| 예차금회수 (잔이월금) | 7,456 | 10,185 | △2,729 | △26.8 | 기본경비 | 418 | 476 | △58 | △12.2 |
| 이자수입 | 56 | 193 | △137 | △71.0 | 예 차 금 (차이월금) | 4,537 | 7,456 | △2,919 | △39.1 |
| 기타수입 | 170 | 170 | 0 | 0.0 | | | | | |

(2) 기금수지현황

1) 수입계획

- 2019년도 수입계획은 142억 9,600만원으로 2018년도말 기금 조성액 74억 5,600만원을 포함하여 공제료 수입, 보조금(지원금), 소방수익, 학교폭력구상금회수, 이자수입 등 2019년도 수입금 68억 4,000만원으로 구성됨

〈표 3-4〉 2019년도 공제기금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, %)

| 항 목 | 세 부 내 역 | 2019년도(A) | | 2018년도(B) | 증 감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| | | 구성비 | | 금액(C=A-B) | 비율(C/B) |
| 합 계 | | 14,296 | 100.0 | 16,020 | △1,724 | △10.8 |
| 전 입 금 | 공제료 수입 | 6,282 | 44.0 | 5,452 | 830 | 15.2 |
| 보 조 금 | 소 계 | 332 | 2.3 | 21 | 311 | 1,481.0 |
| | 교육감 판결금 정산 | 272 | 1.9 | 0 | 272 | 순증 |
| |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| 23 | 0.2 | 21 | 2 | 9.5 |
| | 교육활동참여자 보상비 부족분 | 37 | 0.2 | 0 | 37 | 순증 |
| 예치금회수 | 전기 이월금 | 7,456 | 52.2 | 10,185 | △2,729 | △26.8 |
| 이 자 수 입 | 이자수입 | 56 | 0.4 | 192 | △136 | △70.8 |
| 기 타 수 입 | 소 계 | 170 | 1.1 | 170 | 0 | 0.0 |
| | 소방수익 | 120 | 0.8 | 120 | 0 | 0.0 |
| | 학교폭력구상금회수 | 50 | 0.3 | 50 | 0 | 0.0 |

- 공제료 수입은 「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5)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의 의무가입자인 학교장이 납부함6)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

- 2019년도 공제료 수입의 경우, 학생수는 감소(△20,727명) 하였으나 공제료 단가(평균 828원)인상으로 2018년도 대비 15.2%, 8억 3,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

〈표 3-5〉 공제료 수입 및 학생수 증감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, 명)

| 연 도 | 당해연도 수입(A) | | 당해연도 공제료 수입(B) | | | 학생수 (산출내역 기준) | | 공제료 단가 평균 (원) |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
| | 전년대비 증 감 | | 구성비 (B/A) | 전년대비 증 감 | | 전년대비 증 감 | | 전년대비 증 감 | |
| 2019 | 6,840 | 1,005 | 6,282 | 91.8 | 831 | 962,766 | △20,727 | 6,023 | 828 |
| 2018 | 5,835 | △2,131 | 5,451 | 93.4 | △325 | 983,493 | △62,218 | 5,195 | 30 |
| 2017 | 7,966 | | 5,776 | 72.5 | | 1,045,711 | | 5,165 | |

※ 2019~2018년도는 기금운용계획서 기준이며, 2017년도는 결산서 기준임

- 학교안전공제회는 「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4항7)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, 공제급여의 지급실적,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 단가를 결정하고 있는 바,

- 5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)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. 다만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.
- 6) 2018년도부터 학교업무경감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일괄납부 하고 있음
- 7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공제료)
 - ③ **교육부장관은**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,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**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**하여야 한다.
 - ④ **공제회는**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,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**공제료를 산정**하고 이를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2019년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는 교육부 고시금액보다 5% 인상⁸⁾된 6,023원(평균)으로 산정된 것으로 검토됨
- 동 산정 금액은 2018년도 공제료(평균 단가 5,195원)대비 15.9% 증가한 것이고, 최근 3년간 공제료 평균 인상률(5.1%)⁹⁾ 보다 높은 것으로, 2019년도 기준 공제료 단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¹⁰⁾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〈표 3-6〉 2019년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

(단위 : 원, %)

| 구 분 | | 유 | 초 | 중 | 고 | 공제료 평균단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
| 2019년도 | 공제회계획 (A) | 2,250 | 3,990 | 7,980 | 9,870 | 6,023 |
| | 교육부고시 (B) | 2,150 | 3,800 | 7,600 | 9,400 | 5,738 |
| 2018년도 | 공제회단가 (C) | 1,950 | 3,390 | 6,890 | 8,550 | 5,195 |
| 공제회 계획 대비 교육부 고시증감률(D=(A-B)/B) | | 4.7 | 5.0 | 5.0 | 5.0 | 5.0 |
| 전년도 대비 공제료 증감률(E=(A-C)/C) | | 15.4 | 17.7 | 15.8 | 15.4 | 15.9 |

8) 2019년도 교육부 ‘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’(교육부고시 제2018-167호, 2018.10.30.)
1.~2. 생략

- 다. 각 시·도공제회는 시·도별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, 학교급별 기준공제료 대비 5%이내 조정할 수 있다.

9) 학생 1인당 기준(평균) 공제료 인상률

(단위 : 원, %)

| 구분 | 2019 | 2018 | 2017 | 2016 | 2015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1인당 기준(평균)공제료 | 6,023 | 5,195 | 5,165 | 4,870 | 4,483 |
| 인 상 률 | 15.9 | 0.6 | 6.1 | 8.6 | |

10) 학교안전공제회의 2019년도 기준 공제료 대비 5%인상 사유

- 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료 총액의 현가 일치 적용(수지 상등의 원칙)
- 수년간 인상률 저하에 따른 수입과 지출 불균형 해소
- 비급여 항목 증가에 따른 지급 보험금 기금 확보 필요

- **보조금**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51조¹¹⁾에 근거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수입으로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(2,300만원), 교육활동참여자 보상비 부족분(3,700만원), 금년도 학교안전사고 판결금 지급 관련 정산 절차 개선¹²⁾에 따른 교육감 판결금 정산금(2억 7,200만원)으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
- **전기이월금**은 전년도 이월금 감소로 2018년도 대비 △26.8%, △27억 2,900만원이 감소된 74억 5,600만원이고, **이자수입**은 이월금감소 및 저금리로 2018년도 대비 △70.8%, △1억 3,600만원이 감소된 5,60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
- **소방수익**은 1억 2,000만원으로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제2항¹³⁾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¹⁴⁾에 따라 공제회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소방안전점검사업에서 발생한 바, 이를 수입계획에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

11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1조(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공제자(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학생인 피공제자를 말한다)에 대한 공제료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1.~2. 생략
3.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

12) 서울시교육청, 행정관리담당관-1615('18.02.20.) “학교안전사고 판결금 지급 관련 정산 절차 알림” 법원 판결 → 서울시교육청은 판결금 전체에 대하여 학교공제회에 지급 요청 → 학교안전공제회는 매년 11월 20일까지 지급한 판결금 중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위자료 등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정산 요청 → 서울시교육청은 검토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지급

13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공제회의 사업)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14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10조의5(공제회의 수익사업 등)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(이하 "공제회"라 한다)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1.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·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
2. 소독·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
3.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

2) 지출계획

- 2019년도 지출계획은 142억 9,600만원으로 예치금 45억 3,700만원을 포함하여 인력운영비(11억 6,500만원), 기본경비(4억 1,800만원) 및 비용자성사업비(81억 7,600만원)로 지출계획을 편성하고 있음

〈표 3-7〉 2019년도 공제기금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, %)

| 항 목 | 세 부 내 역 | 2019년도(A) | | 2018년도 (B) | 증 감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| 구성비 | | 증감액 (A-B) | 증감률 | |
| 합 계 | | 14,296 | 100.0 | 16,020 | △1,724 | △10.8 | |
| 비용자성 사 업 비 | 소 계 | 8,176 | 57.2 | 7,017 | 1,159 | 16.5 | |
| | 공 제 사업비 | 소 계 | 7,387 | 51.7 | 6,059 | 1,328 | 21.9 |
| | | 공제급여 (사고보상비) | 6,820 | 47.7 | 5,883 | 937 | 15.9 |
| | | 소송업무 | 432 | 3.0 | 146 | 286 | 195.9 |
| | | 보상심사위원회 | 53 | 0.4 | 30 | 23 | 76.7 |
| | | 비용의 보전 | 82 | 0.6 | 0 | 82 | 순증 |
| | 예방사업비 | 605 | 4.2 | 678 | △73 | △10.8 | |
| |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| 72 | 0.5 | 160 | △88 | △55.0 | |
| | 학교폭력피해지원 | 112 | 0.8 | 120 | △8 | △6.7 | |
| 인 력 운 영 비 | 소 계 | 1,165 | 8.1 | 1,071 | 94 | 8.8 | |
| | 급 여 | 886 | 6.2 | 884 | 2 | 0.2 | |
| | 수 당 | 206 | 1.4 | 187 | 19 | 10.2 | |
| | 4대 보험 | 73 | 0.5 | 0 | 73 | 순증 | |
| 기본경비 | 소 계 | 418 | 2.9 | 476 | △58 | △12.2 | |
| | 업무추진비 | 34 | 0.2 | 34 | 0 | 0.0 | |
| | 일반운영비 | 384 | 2.7 | 442 | △58 | △13.1 | |
| 예 치 금 | 차기 이월금 | 4,537 | 31.7 | 7,456 | △2,919 | △39.1 | |

- 2019년도 공제사업비 중 **소송업무**는 2018년도 대비 195.9%, 2억 8,600만원이 증액된 4억 3,200만원을 편성한 바, 주된 사유는 금년도 학교안전사고 판결금 지급 관련 정산 절차 개선¹⁵⁾에 따른 교육감 판결금 지원금(3억 2,600만원)의 신규 편성인 것으로 검토되며,
 - **비용의보전**은 금년도 소송 및 의료자문료에 편성되었던 항목을 2019년도부터 교직원 등에 대한 비용의 보전을 확대하고자 소송 업무와 별개로 구분하여 8,200만원을 분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
- 아울러, 2019년도에도 기금 수입(68억 4,000만원)보다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(97억 5,900만원)이 많아 기금의 연도말 현재액이 감소(△29억 1,900만원)될 것으로 예상되기에,
- 공제회에서는 기금 감소 최소화를 위한 기타수입과 수익사업의 증대 등 다각적인 재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, 인력운영비 및 임차료 등 기본경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15) 서울시교육청, 행정관리담당관-1615 ('18.02.20.) “학교안전사고 판결금 지급 관련 정산 절차 알림” 법원 판결 → 서울시교육청은 판결금 전체에 대하여 학교공제회에 지급 요청 → 학교안전공제회는 매년 11월 20일까지 지급한 판결금 중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위자료 등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정산 요청 → 서울시교육청은 검토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지급

IV. 심사결과

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2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3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244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18년 11월 1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·신체에 입은 피해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「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(안)」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

2. 관련법규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제53조

3. 주요내용

가.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기본방향

- 학생,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,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,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를 지급하며
- 학교폭력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

나.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

- 총괄

(단위: 천원)

| 수 입 | | | | | | 지 출 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계 | 보조금 | 공제료 수 입 | 예치금 회수 | 이자 수입 | 기타 수입 | 계 | 고 유 목 적 사업비 | 인 력 운영비 (인건비) | 기 본 경 비 (운영비) | 예치금 |
| 14,296,003 | 332,401 | 6,281,885 | 7,456,225 | 55,492 | 170,000 | 14,296,003 | 8,176,073 | 1,165,061 | 417,692 | 4,537,177 |

※ 보조금: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보조 + 교육활동참여자 보상비 부족분 + 교육감 판결금 정산

※ 기타수입: 수익사업(학교소방시설관리사업) 운영 수익금 + 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구상금

※ 고유목적사업비: 공제사업비 + 예방사업비 + 학교폭력피해지원비 +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비

- 수입계획은 14,296,003천원으로
 -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보조금 23,597천원
 - 교육활동참여자 보상비 부족분 36,600천원
 - 교육감 판결금 정산 272,204천원
 - 공제료수입 6,281,885천원
 - 예치금 회수(전년도 이월금) 7,456,225천원
 - 이자수입 55,492천원
 - 수익사업 전입금 120,000천원
 -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50,000천원임

- 지출계획은 14,296,003천원으로
 - 공제사업비 7,387,184천원
 - 예방사업비 605,030천원
 -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71,380천원
 - 학교폭력피해지원 112,479천원
 - 인건비 1,165,061천원
 - 운영비 417,692천원
 - 차년도 예치금(차기 이월금)은 4,537,177천원임

별첨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서 1부.

【별첨】

2019년도
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
운용계획서



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
The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

I. 기금운용계획 총괄

1. 기금개요

가. 설치근거: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

나. 설치연도: 2007년

다. 기금의 조성

공제료 수입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기금의 운용수익, 적립금, 결산상 잉여금, 차입금,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

라. 기금의 용도

- 1) 공제급여의 지급
- 2) 공제회의 재정 지원
- 3)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
- 4)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·연구·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·교육 지원 사업
- 5)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
- 6) 그 밖의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

마. 운용체계

기금운용계획 수립 - 이사회 심의·의결 - 시의회 심의·의결 - 기금운용 집행 - 결산

바. 기금재원

공제료 수입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기금의 운용수익, 적립금, 결산상 잉여금, 차입금,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

2. 기금운용계획 총괄표

□ 수입계획

(단위: 천원)

| 기 금 명 | 수 입 계 획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| 계 | 전입금 | 보조금 | 예치금회수 (전기이월금) | 이자수입 | 기타수입 |
| 학교안전공제및 사고예방기금 | 14,296,003 | 6,281,885 | 332,401 | 7,456,225 | 55,492 | 170,000 |

□ 지출계획

(단위: 천원)

| 기 금 명 | 지 출 계 획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계 | 비용자성 사업비 | 인력운영비 (구 인건비) | 기본경비 (구 물건비) | 예치금 (차기이월금) |
| 학교안전공제및 사고예방기금 | 14,296,003 | 8,176,073 | 1,165,061 | 417,692 | 4,537,177 |

3. 기금 조성규모

(단위: 천원)

| 2018년도말 조성액 ① |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| | 2019년도말 조성액 ④=①+②-③ | 증감 ⑤=④-①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수입② | 지출③ | | | |
| 학교안전공제및 사고예방기금 | 7,456,225 | 6,839,778 | 9,758,826 | 4,537,177 | -2,919,048 |

4. 기금 총 조성규모

(단위: 천원)

| 기 금 명 | 2019년도말 조성액 ① | 융자금 미회수채권 ② | 총 조성규모 ③=①+②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합 계 | 4,537,177 | - | 4,537,177 |

II. 기금운용계획 내역

1. 운용총칙

회계연도: 2019년

예산구분: 본예산

회계구분: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

가. 기금설치 개요

- 1) 설치근거: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
- 2) 설치목적: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
재원 확보 및 공제급여의 충당
- 3) 설치년도: 2007년

나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- 1) 기금사업의 목표: 학생,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보호기능 강화
- 2)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
 - 공제급여의 지급,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·연구·홍보 및 학교안전
사고의 예방·교육지원
 -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

다. 기금조성 및 운용

- 1) 기금조성 현황
 -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: 천원)

| 2018년도말 조성액(a) | 2019년도 조성계획 | | | 2019년도 말 조성액 (e)=(d)+a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수입(b) | 지출(c) | 증감(d)=(b)-c | | |
| 7,456,225 | 6,839,778 | 9,758,826 | -2,919,048 | 4,537,177 | |
| 계 | | | | 4,537,177 | |

○ 기금 총 조성규모

(단위: 천원)

| 2019년도 말 조성액(a) | 융자금 미회수채권(b) | 총 조성규모(c)=(a)+b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4,537,177 | 0 | 4,537,177 |

2) 재원조성

- 공제료 수입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기금의 운용 수익, 적립금, 결산상 잉여금, 차입금,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

3) 지원기준

- 요양급여: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
- 장해급여: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「국가배상법」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
- 간병급여: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
- 유족급여: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「국가배상법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
- 장 의 비: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「국가배상법」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

※ 학교폭력은 요양급여만 해당함

4) 지원대상

- 학교안전사고: 학생, 교직원, 교육활동참여자
- 학교폭력사고: 피해학생

2. 자금운용계획

가. 자금수지총괄

(단위: 천원)

| 수입 계획 | | | | 지출 계획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항 목 | 수입액 | 전년도 수입액 | 증 감 | 항 목 | 지출액 | 전년도 지출액 | 증 감 |
| 합 계 | 14,296,003 | 16,020,709 | △1,724,706 | 합 계 | 14,296,003 | 16,020,709 | △1,724,706 |
| 전입금 | 6,281,885 | 5,451,817 | 830,068 | 비용자성사업비 | 8,176,073 | 7,017,680 | 1,158,393 |
| 보조금 | 332,401 | 21,400 | 311,001 | 융자성사업비 | | | |
| 차입금 | | | | 인력운영비 (구 인건비) | 1,165,061 | 1,071,225 | 93,836 |
| 융자금회수 (이자 포함) | | | | 기본경비 (구 물건비) | 417,692 | 475,579 | △57,887 |
| 예탁금 원금회수 | | | | 예탁금 | | | |
| 예치금회수 (전기이월금) | 7,456,225 | 10,185,342 | △2,729,117 | 예치금 (차기이월금) | 4,537,177 | 7,456,225 | △2,919,048 |
| 이자수입 | 55,492 | 192,150 | △136,658 | 예수금원리금상환 | | | |
| 기타수입 | 170,000 | 170,000 | 0 | 기타지출 | | | |

※ 비용자성사업비: 사업비 +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비 + 학교폭력피해지원비

※ 기본경비: 업무추진비 + 일반운영비

나. 수입계획

(단위: 천원)

| 장·관·항·목 | 수입액 | 전년도 수입액 | 증감 | 산출내역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|
| 200세외수입 | 6,507,377 | 5,813,967 | 693,410 | |
| 210경상적세외수입 | 175,492 | 312,150 | △136,658 | |
| 214사업수입 | 120,000 | 120,000 | 0 | |
| 214-09기타사업수입 | 120,000 | 120,000 | 0 | |
| | | | | ○ 소방사업이익금 120,000,000원 |
| 216이자수입 | 55,492 | 192,150 | △136,658 | |
| 216-01공공예금이자수입 | 55,492 | 192,150 | △136,658 | |
| | | | | ○ 이자수입 45,974,920원 - 보통예금 이자 800,000원 - 단기운용상품 이자 10,035,660원 - 예금만기 이자 20,139,260원 - 법인세환급금 15,000,000원 ○ 학교폭력피해지원금 이자수입 - 예금이자 9,517,500원 |
| 220임시적세외수입 | 6,331,885 | 5,501,817 | 830,068 | |
| 222부담금 | 6,281,885 | 5,451,817 | 830,068 | |
| 222-02일반부담금 | 6,281,885 | 5,451,817 | 830,068 | |
| | | | | ■ 공제료 수입 6,281,884,670원 ○ 교육청 일괄 납부 5,605,697,100원 - 유치원 2,250원×17,068명 = 38,403,000원 - 초등학교 3,990원×418,426명 = 1,669,519,740원 - 중학교 7,980원×207,064명 = 1,652,370,720원 - 고등학교 9,870원×222,439명 = 2,195,472,930원 - 특수학교 9,870원×4,893명 = 48,293,910원 - 방송통신중, 고 800원×2,046명 = 1,636,800원 ○ 공제회 징수 676,187,570원 - 사립유치원 2,250원×65,061명 = 146,387,250원 - 국립, 사립초등학교 3,990원×21,412명 = 85,433,880원 - 국립, 국제중학교 7,980원×4,357명 = 34,768,860원 |

(단위: 천원)

| 장·관·항·목 | 수입액 | 전년도 수입액 | 증감 | 산출내역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|
| | | | | - 미지원사립고등학교 9,870원×35,453명 = 349,921,110원 - 국립 특수학교 9,870원×441명 = 4,352,670원 - 평생학교, 각종학교 6,020원×9,190명 = 55,323,800원 |
| 224기타수입 | 50,000 | 50,000 | 0 | |
| 224-05기부금 | 0 | 0 | 0 | |
| | | | | ○ 교육청교육금고약정기간 만료 |
| 224-06그 외 수입 | 50,000 | 50,000 | 0 | |
| | | | | ○ 학교폭력구상금 50,000,000원 |
| 500 보조금 | 332,401 | 21,400 | 311,001 | |
| 520 시·도비 보조금 등 | 332,401 | 21,400 | 311,001 | |
| 521 시·도비 보조금 등 | 332,401 | 21,400 | 311,001 | |
| 521-01 시·도비 보조금 등 | 332,401 | 21,400 | 311,001 | ○ 교육감 판결금 정산 272,204,000원 ○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보조 23,597,000원 ○ 교육활동참여자 보상비 부족분 36,600,000원 |
| 700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| 7,456,225 | 10,185,342 | △2,729,117 | |
| 714보전수입 등 | 7,456,225 | 10,185,342 | △2,729,117 | |
| 714예치금회수 | 7,456,225 | 10,185,342 | △2,729,117 | |
| 714-01예치금회수 | 7,456,225 | 10,185,342 | △2,729,117 | |
| | | | | ○ 전년도이월금 5,759,327,640원 ○ 임차보증금 184,800,000원 ○ 학교폭력지원기금 전년도이월금 1,512,097,130원 |
| 수입합계 | 14,296,003 | 16,020,709 | △1,724,706 | |

다. 지출계획

(단위: 천원)

| 조직 · 부문 · 정책 · 단위 · 세부사업 · 편성목 | 지출액 | 전년도지출액 | 증감 |
|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| 14,296,003 | 16,020,709 | △1,724,706 |
| 유아및초중등교육 | 14,296,003 | 16,020,709 | △1,724,706 |
| 사업비 | 7,992,214 | 6,737,200 | 1,255,014 |
| 공제사업비 | 7,387,184 | 6,059,200 | 1,327,984 |
| 공제급여 | 6,820,000 | 5,883,000 | 937,000 |
| 307 민간이전 | 6,820,000 | 5,883,000 | 937,000 |
| 05. 민간위탁금 | 6,820,000 | 5,883,000 | 937,000 |
| ○ 공제급여 6,820,000,000원 | | | |
| - 요양급여 340,000원×12,500건 = 4,250,000,000원 | | | |
| - 장해급여 70,000,000원×30건 = 2,100,000,000원 | | | |
| - 간병급여 15,000,000원×2건 = 30,000,000원 | | | |
| - 유족급여 400,000,000원×1건 = 400,000,000원 | | | |
| - 위로금 40,000,000원×1건 = 40,000,000원 | | | |
| 보상심사위원회 | 52,600 | 30,400 | 22,200 |
| 301 일반보상금 | 52,600 | 30,400 | 22,200 |
| 09. 행사실비보상금 | 52,600 | 30,400 | 22,200 |
| ○ 보상심사위원회 52,600,000원 | | | |
| - 참석일비 200,000원×15명×8회 = 24,000,000원 | | | |
| - 회의경비 500,000원×8회 = 4,000,000원 | | | |
| - 회의록 속기비용 600,000원×8회 = 4,800,000원 | | | |
| - 법률 및 의료 자문료 330,000원×60회 = 19,800,000원 | | | |
| 소송업무 | 432,084 | 145,800 | 286,284 |
| 301 일반보상금 | 432,084 | 145,800 | 286,284 |
| 12. 기타보상금 | 432,084 | 145,800 | 286,284 |
| ○ 소송업무 432,084,440원 | | | |
| - 변호사선임료 4,769,982원×20건 = 95,399,640원 | | | |
| - 소송비용 1,000,000원×5건 = 5,000,000원 | | | |

(단위: 천원)

| 조직·부문·정책·단위·세부사업·편성목 | | 지출액 | 전년도지출액 | 증감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| - 송무활동비 60,000원×2명×20건 = 2,400,000원 | | | |
| | - 자문료 330,000원×8건 = 2,640,000원 | | | |
| | - 교육감 판결금 지원 54,440,800원×6건 = 326,644,800원 | | | |
| | 비용의 보전 | 82,500 | 0 | 82,500 |
| | 301 일반보상금 | 82,500 | 0 | 82,500 |
| | 12. 기타보상금 | 82,500 | 0 | 82,500 |
| | ○ 비용의 보전 82,500,000원 | | | |
| | - 손해방지·경감·긴급조치비용 3,000,000원×10건 = 30,000,000원 | | | |
| | - 변호사 선임료 5,000,000원×10회 = 50,000,000원 | | | |
| | - 소송비용 500,000원×5회 = 2,500,000원 | | | |
| | 예방사업비 | 605,030 | 678,000 | △72,970 |
| | 예방사업비 | 605,030 | 678,000 | △72,970 |
| | 307 민간이전 | 605,030 | 678,000 | △72,970 |
| | 05. 민간위탁금 | 605,030 | 678,000 | △72,970 |
| | ○ 예방사업비 605,030,000원 | | | |
| | -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 30,410,000원 | | | |
| | - 공제회 사업 및 기관홍보 60,000,000원 | | | |
| | - 교직원배상책임공제사업 360,000,000원 | | | |
| | - 교직원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 12,550,000원 | | | |
| | - 학교안전교육 전문가 양성 연수과정 개발 및 운영 50,000,000원 | | | |
| | - 안전분야 영상톡 제작 9,660,000원 | | | |
| | - 교육청 연계 안전사고 예방사업 30,000,000원 | | | |
| | - 학교안전사고 예방 연구 용역 30,000,000원 | | | |
| | - 여행자공제사업 21,250,000원 | | | |
| | - 모바일 민원 창구 신설 1,160,000원 | | | |
| | 기관운영비 | 1,582,753 | 1,546,804 | 35,949 |
| | 인건비 | 1,165,061 | 1,071,225 | 93,836 |
| | 급여 | 886,457 | 884,029 | 2,428 |
| | 101 인건비 | 886,457 | 884,029 | 2,428 |

(단위: 천원)

| 조직 · 부문 · 정책 · 단위 · 세부사업 · 편성목 | | 지출액 | 전년도지출액 | 증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01. 보수 | | 886,457 | 884,029 | 2,428 |
| ○ 기본급 | 537,986,880원 | | | |
| - 3급 | : 5,790,490원×1명×12월 = 69,485,880원 | | | |
| - 5급 | : 3,941,190원×1명×12월 = 47,294,280원 | | | |
| - 6급 | : 3,821,380원×2명×12월 = 91,713,120원 | | | |
| - 7급 | : 2,947,620원×3명×12월 = 106,114,320원 | | | |
| - 8급 | : 2,071,870원×6명×12월 = 149,174,640원 | | | |
| - 9급(육아휴직 대체인력 포함) | : 1,545,930원×4명×12월 = 74,204,640원 | | | |
| ○ 정근수당 | 42,000,000원×0.4×2회 = 33,600,000원 | | | |
| ○ 명절휴가비 | 42,000,000원×0.6×2회 = 50,400,000원 | | | |
| ○ 정액급식비 | 130,000원×17명×12월 = 26,520,000원 | | | |
| ○ 가족수당 | 80,000원×10명×12월 = 9,600,000원 | | | |
| ○ 정근수당가산금 | 100,000원×11명×12월 = 13,200,000원 | | | |
| ○ 대우수당 | 4,183,060원×0.041×12월 = 2,058,070원 | | | |
| ○ 연차수당 | 139,912원×17명×8일 = 19,028,030원 | | | |
| ○ 관리업무수당 | 14,653,730원 | | | |
| - 사무국장 | : 5,790,490원×0.09×12월 = 6,253,730원 | | | |
| - 부장 | : 150,000원×2명×12월 = 3,600,000원 | | | |
| - 차·팀장 | : 100,000원×4명×12월 = 4,800,000원 | | | |
| ○ 직급보조비 | 32,760,000원 | | | |
| - 3급 | : 500,000원×1명×12월 = 6,000,000원 | | | |
| - 5급 | : 250,000원×1명×12월 = 3,000,000원 | | | |
| - 6급 | : 155,000원×2명×12월 = 3,720,000원 | | | |
| - 7급 | : 140,000원×3명×12월 = 5,040,000원 | | | |
| - 8·9급 | : 125,000원×10명×12월 = 15,000,000원 | | | |
| ○ 퇴직연금 | 137,050,000원 | | | |
| ○ 일용직임금 | 80,000원×2명×10일×6월 = 9,600,000원 | | | |
| 수당 | | 205,648 | 187,196 | 18,452 |
| 101 인건비 | | 205,648 | 187,196 | 18,452 |
| 01. 보수 | | 205,648 | 187,196 | 18,452 |
| ○ 연장근로수당 | 83,528,170원 | | | |
| - 5급 | : 26,203원×1.5×18시간×1명×12월 = 8,489,770원 | | | |
| - 6급 | : 25,233원×1.5×18시간×2명×12월 = 16,350,980원 | | | |

(단위: 천원)

| 조직 · 부문 · 정책 · 단위 · 세부사업 · 편성목 | | 지출액 | 전년도지출액 | 증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- 7급 : 19,518원×1.5×18시간×3명×12월 =18,971,500원 | | | |
| | - 8급 : 13,872원×1.5×18시간×6명×12월 =26,967,170원 | | | |
| | - 9급 : 9,837원×1.5×18시간×4명×12월 =12,748,750원 | | | |
| | ○ 이사장업무수당 500,000원×12월 = 6,000,000원 | | | |
| | ○ 특수업무수당 100,000원×16명×12월 = 19,200,000원 | | | |
| | ○ 성과급 71,360,000원 | | | |
| | ○ 육아휴직수당 710,000원×3명×12월 = 25,560,000원 | | | |
| | 4대보험 | 72,956 | 0 | 72,956 |
| | 101 인건비 | 72,956 | 0 | 72,956 |
| | 01. 보수 | 72,956 | 0 | 72,956 |
| | ○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72,955,940원 | | | |
| | - 건강보험 63,000,000원×3.12%×12월 = 23,587,200원 | | | |
| | - 장기요양 63,000,000원×3.12%×7.38%×12월 = 1,740,740원 | | | |
| | - 연금보험 63,000,000원×4.5%×12월 = 34,020,000원 | | | |
| | - 고용보험 63,000,000원×0.9%×12월 = 6,804,000원 | | | |
| | - 산재보험 63,000,000원×0.9%×12월 = 6,804,000원 | | | |
| | 업무추진비 | 33,680 | 33,600 | 80 |
| | 업무추진비 | 33,680 | 33,600 | 80 |
| | 203 업무추진비 | 33,680 | 33,600 | 80 |
| | 01. 기관운영업무추진비 | 28,200 | 33,600 | △5,400 |
| | ○ 직책급 업무추진비 15,600,000원 | | | |
| | - 이 사 장 : 700,000원×12월 = 8,400,000원 | | | |
| | - 사무국장 : 600,000원×12월 = 7,200,000원 | | | |
| | ○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,600,000원 | | | |
| | 02. 정원가산업무추진비 | 680 | 0 | 680 |
| | ○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0,000원×17명 = 680,000원 | | | |
| | 04. 부서운영업무추진비 | 4,800 | 0 | 4,800 |
| | ○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,000원×12월 = 4,800,000원 | | | |

(단위: 천원)

| 조직 · 부문 · 정책 · 단위 · 세부사업 · 편성목 | 지출액 | 전년도지출액 | 증감 |
|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일반운영비 | 384,012 | 441,979 | △57,967 |
| 일반운영비 | 384,012 | 441,979 | △57,967 |
| 201 일반운영비 | 345,612 | 403,579 | △57,967 |
| 01. 사무관리비 | 286,612 | 343,579 | △56,967 |
| ■ 사무국운영관련비용 286,612,000원 | | | |
| ○ 통신비 32,460,000원 | | | |
| - 신문구독 25,000원×3부×12월 = 900,000원 | | | |
| - 전 화 500,000원×12월 = 6,000,000원 | | | |
| - 인터넷 600,000원×12월 = 7,200,000원 | | | |
| - 우편료 1,500,000원×12월 = 18,000,000원 | | | |
| - 문 자 30,000원×12월 = 360,000원 | | | |
| ○ 자산취득비 17,000,000원 | | | |
| - PC 본체 1,500,000원×5대 = 7,500,000원 | | | |
| - 모 니 터 300,000원×5대 = 1,500,000원 | | | |
| - 프 린 터 500,000원×2대 = 1,000,000원 | | | |
| - 사무용가구 500,000원×10대 = 5,000,000원 | | | |
| - 프로그램 구입 비용 2,000,000원 | | | |
| ○ 인쇄비 400,000원×12월 =4,800,000원 | | | |
| ○ 특근매식비 8,000원×6명×15일×12월 = 8,640,000원 | | | |
| ○ 법인운영 관련 자문료 330,000원×3명×12월 = 11,880,000원 | | | |
| ○ 복리후생비 22,520,000원 | | | |
| - 맞춤형복지포인트 1,320,000원×15명×1회 = 19,800,000원 | | | |
| - 직장내동호회지원 20,000원×34명×4회 = 2,720,000원 | | | |
| ○ 직원교육훈련비 38,100,000원 | | | |
| - 직무능력 향상 연수 500,000원×15명×3회 = 22,500,000원 | | | |
| - 중부권직원연수 100,000원×15명 ×4회 = 6,000,000원 | | | |
| - 중앙회직무연수 100,000원×15명 ×3회 = 4,500,000원 | | | |
| - 감정 치유 교육 300,000원×17명 ×1회 = 5,100,000원 | | | |
| ○ 직원워크숍경비 200,000원×15명×2회 = 6,000,000원 | | | |
| ○ 지급임차료 78,492,000원 | | | |
| - 사무실 임차료 2,541,000원×12월 = 30,492,000원 | | | |
| - 사무실 관리비 4,000,000원×12월 = 48,000,000원 | | | |
| ○ 각종렌탈료 12,240,000원 | | | |
| - 복합기 160,000원×12월 = 1,920,000원 | | | |

(단위: 천원)

| 조직·부문·정책·단위·세부사업·편성목 | 지출액 | 전년도지출액 | 증감 |
|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무용차량렌트 620,000원×12월 = 7,440,000원 - 공기청정기 30,000원×6대×12월= 2,160,000원 - 정수기 60,000원×1대×12월 =720,000원 ○ 지급수수료 11,640,000원 - 세 무 기장수수료 400,000원×12월 =4,800,000원 - 홈페이지유지보수 350,000원×12월 =4,200,000원 - 전산통신유지보수 170,000원×12월 =2,040,000원 - 회계프로그램유지보수 50,000원×12월 = 600,000원 ○ 시설장비유지관리비 300,000원×12월 =3,600,000원 ○ 잡비(청소, 사무용품, 탕비실물품 등) 1,370,000원×12월 =16,440,000원 ○ 회의비 22,800,000원 - 이사회 참석수당 200,000원×17명×4회 = 13,600,000원 -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200,000원×5명×4회 = 4,000,000원 - 회의경비 500,000원×8회 = 4,000,000원 - 회의록속기비용 300,000원×4회 = 1,200,000원 | | | |
| 02. 공공운영비 | 59,000 | 60,000 | △1,000 |
| ○ 중앙회 분담금 59,000,000원 | | | |
| 202 여비 | 38,400 | 38,400 | 0 |
| 01. 국내여비 | 38,400 | 38,400 | 0 |
| ○ 근무지내·외 출장여비 38,400,000원 | | | |
| - 관내출장비 20,000원×8명×10회×12월 =19,200,000원 | | | |
| - 관외출장비 200,000원×4명×2회×12월 = 19,200,000원 | | | |
|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| 71,380 | 160,020 | △88,640 |
|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| 71,380 | 160,020 | △88,640 |
|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| 71,380 | 160,020 | △88,640 |
| 307 민간이전 | 71,380 | 160,020 | △88,640 |
| 05. 민간위탁금 | 71,380 | 160,020 | △88,640 |
| ○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비용 400,000원×10건×12월 = 48,000,000원 | | | |
| ○ 상담자문위원회 11,400,000원 | | | |
| - 참석수당 200,000원×7명×6회 = 8,400,000원 | | | |

(단위: 천원)

| 조직 · 부문 · 정책 · 단위 · 세부사업 · 편성목 | | | | 지출액 | 전년도지출액 | 증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의경비 300,000원×6회 = 1,800,000원 - 자료제작· 회의록속기 200,000원×6회 = 1,200,000원 ○ 법률 및 의료자문 330,000원×1회×6월 = 1,980,000원 ○ 상담지원제도 홍보 2,500,000원×4회 = 10,000,000원 | | | |
| | | 학교폭력피해지원 | | 112,479 | 120,460 | △7,981 |
| | | 학교폭력피해지원 | | 112,479 | 120,460 | △7,981 |
| | | 학교폭력피해지원 | | 112,479 | 120,460 | △7,981 |
| | | 301 일반보상금 | | 112,479 | 120,460 | △7,981 |
| | | 12. 기타보상금 | | 112,479 | 120,460 | △7,981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폭력피해지원비 112,478,380원 - 심리상담 비용 749,568원×55건 = 41,226,240원 -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 1,409,738원×30건 = 42,292,140원 - 구상권행사경비 250,000원×100건 = 25,000,000원 - 법률자문료 330,000원×12건 = 3,960,000원 | | | | |
| | | 차기 이월금 | | 4,537,177 | 7,456,225 | △2,919,048 |
| | | 차기 이월금 | | 4,537,177 | 7,456,225 | △2,919,048 |
| | | 차기 이월금 | | 4,537,177 | 7,456,225 | △2,919,048 |
| | | 602 예치금 | | 4,537,177 | 7,456,225 | △2,919,048 |
| | | 1. 예치금 | | 4,537,177 | 7,456,225 | △2,919,048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무국 차기이월금 2,991,420,970원 - 차기이월금 2,743,073,470원 - 임차보증금 248,347,500원 ○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금 이월 86,620,000원 ○ 학교폭력피해지원금 이월 1,459,136,250원 | | | | |
| 지출 합 계 | | | | 14,296,003 | 16,020,709 | △1,724,706 |

3.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

(단위: 백만원)

| 연도별 | 조 성 액 | | | | | | | | 집 행 액 | | | | | | 잔액 ①-②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계① | 전입금 | 보조금 | 공제료 수입 | 융자금 회수 (이자 포함) | 예수 금 | 이자 수입 | 기타 수입 | 계② | 공제·예방 및 상담 지원비 | 학교 폭력 지원비 |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| 차입 금 원리 금 상환 | 예수 금 원리 금 상환 | | 기 타 지 출 |
| ~ 2006 년 까지 | 44,468 | 9,307 | | 23,014 | | | 12,147 | | 29,378 | 25,495 | | 3,883 | | | | 15,090 |
| 2007 | 2,990 | 42 | | 2,220 | | | 728 | | 3,765 | 3,180 | | 585 | | | | -775 |
| 2008 | 2,988 | 30 | | 2,191 | | | 647 | 120 | 3,149 | 2,511 | | 638 | | | | -161 |
| 2009 | 3,947 | 30 | | 3,201 | | | 596 | 120 | 3,496 | 2,809 | | 687 | | | | 451 |
| 2010 | 4,402 | 30 | | 3,652 | | | 600 | 120 | 3,905 | 3,132 | | 773 | | | | 497 |
| 2011 | 4,245 | 30 | | 3,518 | | | 577 | 120 | 4,709 | 3,795 | | 914 | | | | -464 |
| 2012 | 6,145 | 30 | 1,668 | 3,710 | | | 617 | 120 | 5,679 | 4,441 | 71 | 1,167 | | | | 466 |
| 2013 | 4,858 | 60 | | 3,895 | 52 | | 731 | 120 | 7,512 | 6,104 | 70 | 1,338 | | | | -2,654 |
| 2014 | 5,543 | | | 4,744 | 53 | | 626 | 120 | 7,963 | 6,624 | 92 | 1,247 | | | | -2,420 |
| 2015 | 6,123 | 60 | 175 | 5,445 | 62 | | 261 | 120 | 6,124 | 4,930 | 88 | 1,106 | | | | -1 |
| 2016 | 5,970 | 60 | 12 | 5,674 | 64 | | 140 | 20 | 6,308 | 5,099 | 100 | 1,109 | | | | -338 |
| 2017 | 7,966 | | 1,857 | 5,776 | 64 | | 149 | 120 | 6,970 | 5,671 | 75 | 1,224 | | | | 996 |
| 2018 | 5,835 | | 21 | 5,452 | 50 | | 192 | 120 | 8,564 | 6,897 | 120 | 1,547 | | | | -2,729 |
| 2019 | 6,840 | | 332 | 6,282 | 50 | | 56 | 120 | 9,759 | 8,064 | 112 | 1,583 | | | | -2,919 |
| 계 | 112,320 | 9,679 | 4,065 | 78,774 | 395 | | 18,067 | 1,340 | 107,281 | 88,752 | 728 | 17,801 | | | | 5,039 |

* 2018년, 2019년도는 예산액 기준임

4.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(단위: 천원)

| 구분 | 예치(탁)처 | 예치 및 예탁액 | | | | 비 고 |
|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
| | | 2017년도말 현재액 | 2018년도말 현재액① | 2019년도말 현재액② | 증 감 (②-①) | |
| 합계 | | 10,686,065 | 7,456,225 | 4,537,177 | -2,919,048 | |
| | 우리은행 | 400,000 | 400,000 | 0 | -400,000 | |
| | 농협은행 | 10,037,718 | 6,871,425 | 4,288,830 | -2,582,595 | |
| | 임차보증금 | 248,347 | 184,800 | 248,347 | 63,547 | |

* 2018년, 2019년도는 예산액 기준임